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09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서일 준의원안)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일준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17.

다. 회 부 일 : 2026. 4.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함.

이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서일준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u>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85조의11)</u> ○ 적용요건: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활용되는 유료도로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유료도로의 통행자에게 통행료를 환급 ○ 세액공제액: 환급액 × 30%(중소기업 50%) ○ 적용기한: 2031. 12. 31.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서일준의원안 2026. 4. 17. 발의(의안번호 18409)

□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활용되는 유료도로에 대하여 유료도로의 통행자에게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¹⁾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공포 후 정부가 6개 시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범사업을 선정(2005년 7~8월)하였으며, 현재는 4개 지역에서 기업 도시를 개발 중임.

[기업도시 추진현황]

구분	면적 (만㎡)	사업 기간	총사업비 (억원)	추진현황	기업유치
충주	701	'07-'12	6,352	준공('12), 분양률 100%	23개사 유치
원주	529	'08-'19	10,425	준공('19), 분양률 100%	50개사 유치
태안	1,546	'07-'25	1조 2,982	공정률 61%, 골프장 4개소 운영 중, 콘도 및 화훼보전화센터 등 운영	골프장 4개소, 콘도 등 유치
영암/ 해남	3,379	'06-'30	3조 2,611	3개 지구로 개발 (구성지구 착공 '13.1, 삼호지구 착공 '14.6, 삼포지구 1단계 F1 경기장 사용 등)	골프장 4개소, 등 태양광발전소 등 유치

자료: 재정경제부

[기업도시 입주, 투자, 고용현황]

구 분	입주현황	투자현황	일자리 창출
충주기업도시	23개사 가동	1조 5,687억원	4,214여명 고용
원주기업도시	35개사 가동	9,281억원	4,232여명 고용
태안기업도시	10개사 가동 1개사 공사중	2,534억원	760여명 고용
영암·해남 기업도시	1개사 가동 3개사 공사중	4,473억원	183명 고용

자료: 재정경제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말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1.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00%, 2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50%, 2년간 25%의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됨.²⁾

□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의 통행료 환급 조치를 유인하여 지역방문 수요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2024년 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되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기준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이 해당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에 사용되는 토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충당을 위한 경우까지 확대되었으며,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등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에 정부는 기업도시 2.0으로서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 기준 선도사업 대상지로 ①거제(문화예술, ICT, 바이오·의료), ②당진(모빌리티), ③춘천(의료, 바이오, IT), ④포항(이차전지) 등 4개 지역이 선정되었음.

한편, 통행료 인하가 시행된 고속도로 노선을 대상으로 전후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요금 인하율과 요금 인하액이 클수록 교통량 증가율이 높다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음.³⁾

동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통행료 환급을 유도하여 기업도시를 방문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면, 기업도시 방문객을 늘려 도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기업혁신파크 등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업도시 방문수요는 통행료뿐만 아니라 접근시간과 거리, 대형 기업·복합문화시설·관광지 등 기업도시 내의 기반시설 유무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통행료 환급이 늘어나더라도 방문수요 증가 효과가 나타날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둘째, 세액공제 지원대상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 환급을 하는 경우로만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유료도로 통행료 인하효과의 실증 분석 및 사업재구조화 적용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20. 11.

동 세액공제의 취지는 기업의 통행료 환급을 유도하고, 유료도로 통행객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금으로 통행료를 환급받는 것과 비교할 때 사용처 제약이 존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면 통행객 입장에서 통행료 환급의 체감효용이 감소하여 정책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155

4)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유료도로 통행료는 도로 이용에 따른 시간·교통상 편익에 대한 대가로서, 편익을 직접 누리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료도로로 인해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제3자가 함께 통행료를 분담하더라도, 이는 사인 간 자율 조정사항으로 정부의 세제 지원 대상이 아라는 입장임